학교법인 덕성학원 및 덕성여자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2019. 9. 18.(수) ~ 9. 24.(화)(5일간)

나. 감사인원: 4명(공인회계사 2명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분 야 별	법인회계	교비회계	계
지적사항	4	5	9
현지조치	-	1	1
계	4	6	10

나. 세부지적 및 처분: “붙임”처분서 참고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동 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덕성학원은 2014. 12. 24. 교육용기본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ㄱ 번지(195㎡)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한 후 2019. 9. 감사일 현재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붙임】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도봉구 ㄱ 번지 등 54필지(12,097㎡, 지목-전·답, 대지)를 2014. 12.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2019. 9. 감사일 현재까지 수익이 전무함에도 수익창출 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 **통보** - 서울시 도봉구 ㄱ번지 등 54필지에 대해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수익성이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붙임】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서울 도봉구)	지목	평가액(공시지가)			장부가액(원)	취득 년월일	용도변경	'14. 12. ~ '19 수익유무
			면적 (㎡)	㎡당금액 (원)	평가액 (천원)	매입당시가격			
1	-	대	195	1,581,000	-	-	2001.2.1.	교육 → 수익	없음
2	-	대	142	1,605,000	-	-	2000.5.28.	교육 → 수익	〃
3	-	대	73	1,532,000	-	-	1999.12.31.	교육 → 수익	〃
4	-	대	150	1,815,000	-	-	1999.7.13.	교육 → 수익	〃
5	-	대	202	1,780,000	-	-	1996.6.14.	교육 → 수익	〃
6	-	대	252	1,804,000	-	-	1995.12.11.	교육 → 수익	〃
7	-	대	149	1,726,000	-	-	1995.6.5.	교육 → 수익	〃
8	--	대	192	1,581,000	-	-	1995.5.3.	교육 → 수익	〃
9	-	대	96	1,557,000	-	-	1994.5.12.	교육 → 수익	〃
10	-	대	102	1,452,000	-	-	1994.5.12.	교육 → 수익	〃
11	-	대	149	1,532,000	-	-	1994.4.14.	교육 → 수익	〃
12	-	대	111	1,726,000	-	-	1994.2.22.	교육 → 수익	〃
13	-	대	14	1,707,000	-	-	1994.2.22.	교육 → 수익	〃
14	-	대	136	1,513,000	-	-	1993.10.26.	교육 → 수익	〃
15	-	대	209	1,833,000	-	-	1993.10.13.	교육 → 수익	〃
16	-	대	139	1,677,000	-	-	1993.9.23.	교육 → 수익	〃
17	-	대	60	1,815,000	-	-	1993.9.23.	교육 → 수익	〃
18	-	대	294	1,762,000	-	-	1992.12.17.	교육 → 수익	〃
19	-	대	99	1,726,000	-	-	1992.12.16.	교육 → 수익	〃
20	-	대	111	1,780,000	-	-	1988.5.2.	교육 → 수익	〃
21	-	대	122	1,780,000	-	-	1988.1.8.	교육 → 수익	〃
22	-	대	145	1,858,000	-	-	1986.12.12.	교육 → 수익	〃
23	-	대	230	1,804,000	-	-	1985.8.28.	교육 → 수익	〃
24	-	대	102	1,496,000	-	-	1985.4.18.	교육 → 수익	〃
25	-	대	39	1,780,000	-	-	1983.12.28.	교육 → 수익	〃
26	-	전	17	1,748,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27	-	전	30	1,532,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번호	소재지 지번 (서울 도봉구)	지목	평가액(공시지가)			장부가액(원)	취득 년월일	용도변경	'14. 12. ~ '19 수익유무
			면적 (㎡)	㎡당금액 (원)	평가액 (천원)	매입당시가격			
28		전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없음
29		전	-	1,839,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0		전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1		전	-	1,860,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2		전	-	1,532,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3		전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4		전	-	1,839,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5		전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6		전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7		전	-	2,19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8		전	-	2,21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39		전	-	1,839,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0		전	-	1,748,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1		답	-	2,127,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2		대	-	1,532,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3		대	-	1,748,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4		대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5		대	-	1,532,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6		대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7		대	-	613,8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8		대	-	1,760,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49		대	-	1,760,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50		대	-	1,726,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51		대	-	2,21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52		대	-	1,804,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53		대	-	1,953,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54		대	-	2,007,000	-	-	1983.6.29.	교육 → 수익	〃
합 계			**-**		**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수익사업체 직위 임의 신설 및 업무추진비 지급**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 직원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위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및 부장으로 구분하고, 학교법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인이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덕성학원 수익사업체인 ○○(관리인 A)는 2016. 3. 1. B에 대하여 법인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직제에 없는 수익사업체 직위를 임의 신설·부여한 다음 '개발업무'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토록 하는 등 【붙임】 "직제에 없는 ○○ □□(B)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과 같이 2016. 3.부터 2017. 9.까지(이후 업무추진비 배정 폐지) 위 B에게 업무추진비 총 325건 합계 10,901,300원을 수익사업회계에서 지급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 **통보** - 직제에 없는 수익사업체 직위(부대표)를 임의 신설하여 부대표로 하여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토록 한 전 ○○ 관리인 A 등 관련자들로부터 □□ B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합계 10,901,300원을 회수하여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붙임】

직제에 없는 ○○ □□(B)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1	2016년	2016-03-17	-	10,500
2	2016년	2016-03-17	-	14,500
3	2016년	2016-03-18	-	5,400
4	2016년	2016-03-18	-	16,000
5	2016년	2016-03-18	-	30,000
6	2016년	2016-03-19	-	19,500
7	2016년	2016-03-21	-	46,000
8	2016년	2016-03-21	-	20,400
9	2016년	2016-03-22	-	20,800
10	2016년	2016-03-22	-	9,200
11	2016년	2016-03-22	-	4,000
12	2016년	2016-03-23	-	20,000
13	2016년	2016-03-23	-	42,000
14	2016년	2016-03-24	-	10,000
15	2016년	2016-03-25	-	11,000
16	2016년	2016-03-26	-	21,000
17	2016년	2016-03-26	-	7,300
18	2016년	2016-03-27	-	35,500
19	2016년	2016-03-29	-	40,000
20	2016년	2016-04-01	-	13,500
21	2016년	2016-04-01	-	62,100
22	2016년	2016-04-03	-	23,500
23	2016년	2016-04-07	-	32,000
24	2016년	2016-04-08	-	40,000
25	2016년	2016-04-08	-	79,500
26	2016년	2016-04-14	-	31,000
27	2016년	2016-04-15	-	48,000
28	2016년	2016-04-15	-	61,200
29	2016년	2016-04-19	-	8,200
30	2016년	2016-04-20	-	30,500
31	2016년	2016-04-20	-	30,000
32	2016년	2016-04-20	-	6,000
33	2016년	2016-04-21	-	25,0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34	2016년	2016-04-25	-	33,000
35	2016년	2016-04-26	-	50,000
36	2016년	2016-04-27	-	38,000
37	2016년	2016-04-28	-	58,000
38	2016년	2016-04-30	-	62,000
39	2016년	2016-05-03	-	24,000
40	2016년	2016-05-03	-	55,800
41	2016년	2016-05-04	-	11,200
42	2016년	2016-05-04	-	36,000
43	2016년	2016-05-10	-	52,000
44	2016년	2016-05-11	-	13,800
45	2016년	2016-05-13	-	80,000
46	2016년	2016-05-18	-	11,200
47	2016년	2016-05-18	-	104,000
48	2016년	2016-05-20	-	50,000
49	2016년	2016-05-23	-	17,500
50	2016년	2016-05-23	-	67,000
51	2016년	2016-05-24	-	30,000
52	2016년	2016-05-25	-	6,000
53	2016년	2016-05-25	-	30,000
54	2016년	2016-05-26	-	29,700
55	2016년	2016-05-27	-	90,000
56	2016년	2016-05-31	-	30,000
57	2016년	2016-06-01	-	40,000
58	2016년	2016-06-02	-	4,100
59	2016년	2016-06-02	-	9,900
60	2016년	2016-06-03	-	52,000
61	2016년	2016-06-08	-	13,800
62	2016년	2016-06-11	-	15,000
63	2016년	2016-06-13	-	60,000
64	2016년	2016-06-21	-	380,000
65	2016년	2016-06-23	-	24,000
66	2016년	2016-06-29	-	218,000
67	2016년	2016-07-12	-	42,000
68	2016년	2016-07-22	-	10,700
69	2016년	2016-07-26	-	22,5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70	2016년	2016-07-26	-	20,000
71	2016년	2016-07-27	-	87,000
72	2016년	2016-08-02	-	13,500
73	2016년	2016-08-04	-	169,000
74	2016년	2016-08-05	-	23,000
75	2016년	2016-08-09	-	25,000
76	2016년	2016-08-09	-	22,000
77	2016년	2016-08-10	-	39,000
78	2016년	2016-08-10	-	16,000
79	2016년	2016-08-11	-	18,000
80	2016년	2016-08-12	-	71,000
81	2016년	2016-08-15	-	135,000
82	2016년	2016-08-22	-	16,000
83	2016년	2016-08-23	-	69,000
84	2016년	2016-08-24	-	10,000
85	2016년	2016-08-25	-	77,000
86	2016년	2016-08-25	-	36,000
87	2016년	2016-08-30	-	10,600
88	2016년	2016-08-30	-	12,000
89	2016년	2016-09-13	-	37,000
90	2016년	2016-09-19	-	56,000
91	2016년	2016-09-20	-	10,000
92	2016년	2016-09-20	-	10,000
93	2016년	2016-09-22	-	60,000
94	2016년	2016-09-28	-	10,600
95	2016년	2016-09-28	-	84,000
96	2016년	2016-09-28	-	25,500
97	2016년	2016-09-30	-	10,400
98	2016년	2016-09-30	-	5,000
99	2016년	2016-10-05	-	22,000
100	2016년	2016-10-05	-	10,700
101	2016년	2016-10-06	-	41,000
102	2016년	2016-10-10	-	28,000
103	2016년	2016-10-11	-	40,000
104	2016년	2016-10-12	-	40,000
105	2016년	2016-10-14	-	8,000
106	2016년	2016-10-17	-	11,4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107	2016년	2016-10-17	-	44,000
108	2016년	2016-10-19	-	40,000
109	2016년	2016-10-20	-	57,000
110	2016년	2016-10-20	-	12,900
111	2016년	2016-10-21	-	22,000
112	2016년	2016-10-21	-	32,000
113	2016년	2016-10-26	-	38,500
114	2016년	2016-10-26	-	11,600
115	2016년	2016-10-27	-	25,000
116	2016년	2016-10-27	-	140,000
117	2016년	2016-10-27	-	25,000
118	2016년	2016-10-28	-	5,600
119	2016년	2016-11-01	-	38,000
120	2016년	2016-11-02	-	24,000
121	2016년	2016-11-03	-	17,000
122	2016년	2016-11-03	-	64,000
123	2016년	2016-11-03	-	22,000
124	2016년	2016-11-07	-	9,000
125	2016년	2016-11-07	-	40,000
126	2016년	2016-11-08	-	20,000
127	2016년	2016-11-11	-	60,000
128	2016년	2016-11-11	-	8,500
129	2016년	2016-11-14	-	40,000
130	2016년	2016-11-15	-	105,000
131	2016년	2016-11-16	-	8,000
132	2016년	2016-11-16	-	18,000
133	2016년	2016-11-18	-	24,000
134	2016년	2016-11-21	-	22,000
135	2016년	2016-11-22	-	30,000
136	2016년	2016-11-23	-	40,000
137	2016년	2016-11-25	-	8,800
138	2016년	2016-11-29	-	32,000
139	2016년	2016-12-07	-	9,600
140	2016년	2016-12-08	-	62,000
141	2016년	2016-12-08	-	21,000
142	2016년	2016-12-13	-	42,000
143	2016년	2016-12-13	-	13,5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144	2016년	2016-12-14	-	30,000
145	2016년	2016-12-14	-	9,800
146	2016년	2016-12-15	-	61,000
147	2016년	2016-12-15	-	12,500
148	2016년	2016-12-20	-	13,300
149	2016년	2016-12-20	-	157,000
150	2016년	2016-12-21	-	9,000
151	2016년	2016-12-23	-	33,000
152	2016년	2016-12-27	-	39,000
153	2016년	2016-12-27	-	7,500
154	2016년	2016-12-29	-	28,000
155	2016년	2017-01-03	-	20,000
156	2016년	2017-01-04	-	8,800
157	2016년	2017-01-04	-	18,000
158	2016년	2017-01-05	-	74,000
159	2016년	2017-01-08	-	18,900
160	2016년	2017-01-10	-	9,700
161	2016년	2017-01-10	-	30,000
162	2016년	2017-01-11	-	180,000
163	2016년	2017-01-18	-	62,000
164	2016년	2017-01-18	-	7,500
165	2016년	2017-01-20	-	8,000
166	2016년	2017-01-20	-	12,000
167	2016년	2017-01-24	-	49,200
168	2016년	2017-01-25	-	66,000
169	2016년	2017-01-25	-	5,000
170	2016년	2017-01-26	-	10,000
171	2016년	2017-01-26	-	40,000
172	2016년	2017-01-31	-	50,000
173	2016년	2017-02-01	-	54,000
174	2016년	2017-02-01	-	10,700
175	2016년	2017-02-09	-	48,600
176	2016년	2017-02-10	-	19,000
177	2016년	2017-02-10	-	8,800
178	2016년	2017-02-13	-	44,000
179	2016년	2017-02-13	-	11,000
180	2016년	2017-02-14	-	40,0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181	2016년	2017-02-14	-	36,000
182	2016년	2017-02-14	-	10,700
183	2016년	2017-02-16	-	24,600
184	2016년	2017-02-20	-	40,000
185	2016년	2017-02-20	-	20,000
186	2016년	2017-02-22	-	37,400
187	2016년	2017-02-23	-	57,000
188	2016년	2017-02-27	-	40,000
189	2016년	2017-02-28	-	49,900
190	2017년	2017-03-02	-	56,000
191	2017년	2017-03-02	-	10,200
192	2017년	2017-03-02	-	9,000
193	2017년	2017-03-03	-	75,000
194	2017년	2017-03-06	-	40,000
195	2017년	2017-03-06	-	33,000
196	2017년	2017-03-07	-	45,000
197	2017년	2017-03-08	-	69,000
198	2017년	2017-03-08	-	14,600
199	2017년	2017-03-09	-	8,600
200	2017년	2017-03-13	-	260,000
201	2017년	2017-03-14	-	20,000
202	2017년	2017-03-15	-	16,500
203	2017년	2017-03-15	-	20,000
204	2017년	2017-03-17	-	9,200
205	2017년	2017-03-17	-	30,000
206	2017년	2017-03-20	-	15,600
207	2017년	2017-03-20	-	37,000
208	2017년	2017-03-20	-	36,000
209	2017년	2017-03-24	-	29,000
210	2017년	2017-03-27	-	36,000
211	2017년	2017-03-28	-	27,000
212	2017년	2017-03-29	-	40,000
213	2017년	2017-04-03	-	36,600
214	2017년	2017-04-10	-	38,000
215	2017년	2017-04-12	-	40,000
216	2017년	2017-04-13	-	40,000
217	2017년	2017-04-18	-	30,0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218	2017년	2017-04-24	-	30,000
219	2017년	2017-04-25	-	49,000
220	2017년	2017-04-26	-	19,000
221	2017년	2017-04-28	-	62,000
222	2017년	2017-05-04	-	25,000
223	2017년	2017-05-10	-	8,800
224	2017년	2017-05-10	-	19,000
225	2017년	2017-05-11	-	36,600
226	2017년	2017-05-12	-	21,000
227	2017년	2017-05-15	-	26,000
228	2017년	2017-05-16	-	30,000
229	2017년	2017-05-17	-	35,000
230	2017년	2017-05-19	-	19,500
231	2017년	2017-05-22	-	81,000
232	2017년	2017-05-23	-	30,000
233	2017년	2017-05-24	-	8,800
234	2017년	2017-05-26	-	36,000
235	2017년	2017-05-30	-	25,000
236	2017년	2017-05-31	-	9,000
237	2017년	2017-05-31	-	22,000
238	2017년	2017-06-01	-	76,000
239	2017년	2017-06-02	-	8,500
240	2017년	2017-06-02	-	86,000
241	2017년	2017-06-07	-	21,000
242	2017년	2017-06-14	-	8,800
243	2017년	2017-06-15	-	9,000
244	2017년	2017-06-15	-	28,000
245	2017년	2017-06-15	-	11,000
246	2017년	2017-06-19	-	19,000
247	2017년	2017-06-20	-	14,000
248	2017년	2017-06-22	-	8,500
249	2017년	2017-06-22	-	23,000
250	2017년	2017-06-27	-	21,000
251	2017년	2017-06-27	-	30,000
252	2017년	2017-06-28	-	31,000
253	2017년	2017-06-29	-	54,000
254	2017년	2017-06-29	-	5,0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255	2017년	2017-07-03	-	30,000
256	2017년	2017-07-04	-	28,500
257	2017년	2017-07-05	-	54,000
258	2017년	2017-07-05	-	9,300
259	2017년	2017-07-05	-	36,000
260	2017년	2017-07-06	-	30,000
261	2017년	2017-07-07	-	22,000
262	2017년	2017-07-10	-	27,000
263	2017년	2017-07-11	-	78,000
264	2017년	2017-07-12	-	54,000
265	2017년	2017-07-12	-	22,000
266	2017년	2017-07-13	-	84,000
267	2017년	2017-07-17	-	24,000
268	2017년	2017-07-18	-	31,000
269	2017년	2017-07-18	-	8,800
270	2017년	2017-07-19	-	8,800
271	2017년	2017-07-19	-	31,000
272	2017년	2017-07-19	-	21,000
273	2017년	2017-07-20	-	11,000
274	2017년	2017-07-20	-	30,000
275	2017년	2017-07-21	-	32,500
276	2017년	2017-07-24	-	20,000
277	2017년	2017-07-25	-	18,500
278	2017년	2017-07-25	-	71,000
279	2017년	2017-07-25	-	20,000
280	2017년	2017-07-26	-	21,000
281	2017년	2017-07-26	-	16,100
282	2017년	2017-07-27	-	102,000
283	2017년	2017-07-27	-	10,000
284	2017년	2017-07-31	-	20,000
285	2017년	2017-08-01	-	18,000
286	2017년	2017-08-02	-	30,000
287	2017년	2017-08-03	-	27,000
288	2017년	2017-08-08	-	8,800
289	2017년	2017-08-08	-	20,000
290	2017년	2017-08-09	-	14,000
291	2017년	2017-08-09	-	10,000

연번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처	금액
292	2017년	2017-08-10	-	8,800
293	2017년	2017-08-10	-	16,000
294	2017년	2017-08-17	-	14,000
295	2017년	2017-08-21	-	20,000
296	2017년	2017-08-22	-	26,000
297	2017년	2017-08-23	-	9,000
298	2017년	2017-08-23	-	18,000
299	2017년	2017-08-24	-	22,200
300	2017년	2017-08-25	-	19,000
301	2017년	2017-08-28	-	21,000
302	2017년	2017-08-29	-	22,500
303	2017년	2017-08-30	-	54,000
304	2017년	2017-08-30	-	8,000
305	2017년	2017-08-31	-	11,000
306	2017년	2017-09-01	-	22,000
307	2017년	2017-09-04	-	22,000
308	2017년	2017-09-05	-	22,200
309	2017년	2017-09-05	-	45,000
310	2017년	2017-09-06	-	20,000
311	2017년	2017-09-06	-	28,000
312	2017년	2017-09-07	-	14,000
313	2017년	2017-09-13	-	22,500
314	2017년	2017-09-14	-	11,000
315	2017년	2017-09-14	-	13,200
316	2017년	2017-09-14	-	20,000
317	2017년	2017-09-15	-	21,000
318	2017년	2017-09-15	-	14,000
319	2017년	2017-09-18	-	20,000
320	2017년	2017-09-20	-	9,400
321	2017년	2017-09-20	-	20,000
322	2017년	2017-09-21	-	20,000
323	2017년	2017-09-22	-	14,000
324	2017년	2017-09-25	-	14,000
325	2017년	2017-09-28	-	16,000
합 계				10,901,3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덕성학원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조비와 격려금에 한하여 업무추진비 연 배정총액의 20%이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되, 법인 및 대학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하며, '해영회관 계약직원(C) 재계약'에 따른 내부결재에 따르면 월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①** - 학교법인 덕성학원 D는 2017. 3. 29.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덕성여대 직원 E의 결혼 축의금 100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붙임1】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내역"과 같이 2017. 3.부터 2019. 1.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위 E 등 법인 산하 임직원 경조사비 총 9회 합계 600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 ②** - 학교법인 덕성학원 수익사업체 해영회관은 2016. 3. 계약직원 C에게 계약상 한도(월 2,000천원)를 초과하여 965,320원을 더 지급하는 등 【붙임2】 "업무추진비 초과	**< ① 관련>** ○ **경고(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합계 600,000원을 D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②관련 >** ○ **경고(3명)** ○ **시정(회수)** - 초과 사용한 업무추진비 합계 2,583,900원을 C으로부터 회수하여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지급내역"과 같이 2016. 3부터 2016. 7.까지 위 C에게 업무추진비 합계 2,583,9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집행일자	지출처	금액	사용 용도
1	2017	2017. 3. 29.	-	100,000	-
2	2017	2017. 5. 18.	-	100,000	-
3	2017	2017. 11. 18.	-	100,000	-
4	2018	2018. 3. 5.	-	50,000	-
5	2018	2018. 10. 12.	-	50,000	-
6	2018	2018. 10. 16.	-	50,000	-
7	2018	2018. 11. 7.	-	50,000	-
8	2018	2019. 1. 15.	-	50,000	-
9	2018	2019. 1. 30.	-	50,000	-
합 계				600,000	

【붙임2】

업무추진비 초과 지급내역

(단위 : 원)

성명	지급월	월 한도	지급액	초과금액
C	2016년 3월	2,000,000	2,965,320	965,320
	2016년 4월		2,637,100	637,100
	2016년 5월		2,081,200	81,200
	2016년 6월		2,033,200	33,200
	2016년 7월		2,867,080	867,080
합 계				**2,583,9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예·결산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未준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비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덕성학원은 2016. 1. 25. 법정 제출기한(2016. 1. 9.)을 도과하여 2016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붙임】“예·결산 이사회 제출 및 확정 기한 未준수 현황”과 같이 위 덕성학원은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법정기한을 짧게는 9일 길게는 31일 도과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한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붙임】

예·결산 이사회 제출 및 확정 기한 未준수 현황

회계	회계연도	구분	이사회 제출			이사회 심의·확정		
			이사회 제출기한	이사회 제출일	도과 일수	이사회 심의·확정기한	이사회 심의·확정일	도과 일수
법인 회계	2016	예산	2016.1.9.	2016.1.25.	16	2016.1.19.	2016.2.17.	29
		결산	2017.4.19.	2017.4.18.	-	2017.4.30.	2017.5.16.	16
	2017	예산	2017.1.9.	2017.1.26.	17	2017.1.19.	2017.2.17.	29
		결산	2018.4.19.	2018.3.23.	-	2018.4.30.	2018.5.21.	21
	2018	예산	2018.1.9.	2018.2.6.	28	2018.1.19.	2018.2.19.	31
		결산	2019.4.19.	2019.3.21.	-	2019.4.30.	2019.5.20.	20
	2019	예산	2019.1.9.	2019.1.24.	15	2019.1.19.	2019.2.18.	30
교비 회계	2016	예산	2016.1.29	2016.1.29	-	2016.2.8	2016.2.17	9
		결산	2017.4.19	2017.4.13	-	2017.4.30	2017.5.16	16
	2017	예산	2017.1.29	2017.2.7	-	2017.2.8	2017.2.17	9
		결산	2018.4.19	2018.4.17	-	2018.4.30	2018.5.21	21
	2018	예산	2018.1.29	2018.1.22	-	2018.2.8	2018.2.19	11
		결산	2019.4.19	2019.4.18	-	2019.4.30	2019.5.20	20
	2019	예산	2019.1.29	2019.01.16	-	2019.2.8	2019.2.18	1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덕성여자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덕성여자대학교 보수규정(2009. 4. 28.)」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재직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월과 9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덕성여자대학교는 F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질병휴직 후 2017. 3. 1. 복직하였음에도 2017. 3월 정근수당 4,329,9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휴직자 등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2019회계연도에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에 재직하지 않은 위 F 등 4명에게 정근수당 합계 14,938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 시정(회수) - F 등 4명에게 과오지급한 정근수당 합계 14,938,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붙임】

휴직자 등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휴직 등 기간	정 근 수 당		비 고
					지급월	지급액	
1	-	-	F	2016.3.1.~ 2017.2.28.	2017. 3월	**4,329,900**	질병휴직
2	-	-	-	2018.3.1.~ 2019.2.28.	2019. 3월	**3,914,200**	질병휴직
3	-	-	-	2018.9.1.~ 2019.2.28.	2019. 3월	**4,652,400**	질병휴직
4	-	-	-	2018.11.26.~ 2019.2.25.	2019. 3월	**2,041,500**	징계처분 (정직 3월)
합 계						**14,938,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덕성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대학 보직자 법인카드 교통비 사용 부적정】-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학교법인 덕성학원 정관」제46조 및 제87조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직원의 보수는 인사규칙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덕성여자대학교 보수규정」제8조에 따르면 행정 책임직 보직자에게는 보직자 교통비를 보직에 따라 120천원~300천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덕성여자대학교 G는 보직자교통비 250천원('15.7.~'18.6, 매월 250천원)을 받고 있음에도 2016. 7. 9.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22,32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붙임1】"보직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8. 4.까지 위 G 등 보직자교통비를 받고 있는 보직자 2명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요금 등 총 37건 교통비 합계 728,88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법인○○ 법인카드 택시비 사용 부적정】- ②**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학교법인 덕성학원 법인사무국 보수규정(2018. 3. 26. 제정)」	**< ① 관련>** **○ 경고(4명)** **○ 시정(회수)** - 보직자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한 G 등 2명으로부터 합계 728,88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② 관련>** **○ 경고(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에게는 교통비(월 135,450원)를 지급하며, 행정 책임직 보직자에게 보직자교통비를 250천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덕성학원 D는 교통비(매월 135,450원) 및 보직자교통비('17. 4.이후, 매월 250천원)를 받고 있음에도 2017. 6. 27.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21,400원을 여비교통비로 집행하는 등 【붙임2】"△△ 여비교통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6.부터 2019. 9.까지 교통비 및 보직자교통비를 받고 있는 위 D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 요금 총 50건 합계 457,360원을 여비교통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시정(회수) - 교통비 및 보직자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D로부터 합계 457,36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붙임1】

보직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보직명	성명	사용일	사용금액	사용내역	비고
1	-	-	-	2016-07-09	22,320	택시 요금	보직자교통비 (월 250,000) 수령
				2016-07-20	23,100	택시 요금	
				2016-08-24	18,960	택시 요금	
				2016-10-19	12,900	택시 요금	
				2016-11-10	3,400	택시 요금	
				2016-12-16	13,900	택시 요금	
				2016-12-17	21,500	택시 요금	
				2016-12-18	16,200	택시 요금	
				2016-12-21	13,100	택시 요금	
				2016-12-21	25,920	택시 요금	
				2017-02-02	9,900	택시 요금	
				2017-03-18	17,880	택시 요금	
				2017-04-01	22,400	택시 요금	
				2017-06-14	5,000	택시 요금	
				2017-06-14	16,400	택시 요금	
				2017-06-16	4,400	택시 요금	
				2017-06-19	20,400	택시 요금	
				2017-07-25	44,500	택시 요금	
				2017-07-26	20,400	택시 요금	
				2017-07-28	14,200	택시 요금	
				2017-11-23	12,000	택시 요금	
				2017-12-11	5,000	택시 요금	
				2017-12-23	18,720	택시 요금	
				2017-12-29	18,480	택시 요금	
				2018-01-19	30,020	택시 요금	
				2018-02-05	15,500	택시 요금	
				2018-03-20	19,080	택시 요금	
				2018-04-02	15,300	택시 요금	
				2016-05-30	45,000	주차 요금	
				2016-07-01	26,000	주차 요금	
2	-	-	-	2016-12-16	36,500	주차 요금	보직자교통비 (월 250,000) 수령
				2017-01-14	38,000	주차 요금	
				2017-06-16	30,000	주차 요금	
				2017-12-08	33,000	주차 요금	
				2016-12-16	30,400	택시 요금	
				2017-01-12	4,900	택시 요금	
				2017-01-14	4,200	택시 요금	
합 계					728,880		

【붙임2】

△△ 여비교통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소속 (직급)	보직명	성명	집행일	사용금액	사용내역	비고
-	-	-	2017.6.27.	21,400	택시비(2건)	교통비 (월 135,450) 및 보직자교통비 (월 250,000) 수령
			2017.8.28.	38,100	택시비(3건)	
			2017.9.27.	17,200	택시비(1건)	
			2017.10.27.	21,540	택시비(4건)	
			2017.11.27.	92,200	택시비(9건)	
			2017.12.27.	6,700	택시비(2건)	
			2018.1.29.	19,620	택시비(2건)	
			2018.2.27.	17,800	택시비(2건)	
			2018.5.28.	22,700	택시비(2건)	
			2018.6.27.	6,000	택시비(2건)	
			2018.7.27.	22,100	택시비(2건)	
			2018.8.27.	78,700	택시비(8건)	
			2018.9.27.	30,700	택시비(2건)	
			2018.10.29.	27,000	택시비(5건)	
			2018.12.27.	16,700	택시비(2건)	
			2019.1.28.	14,400	택시비(1건)	
			2019.7.29.	4,500	택시비(1건)	
합 계				457,360	50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덕성여자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교내 연구과제 신청 및 관리 부적정** ○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규정(2006. 12. 19. 제정, 2016. 11. 9. 개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년으로 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내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퇴직, 사망 등) 등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나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내연구과제 부당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 덕성여자대학교 H는 2019. 3. 4. ▷▷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확정('18. 11. 6.)된 " ㄴ 에 관한 연구" 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2019학년도 교내연구비를 신청(연구기간 : '19.3.1. ~'20. 2. 28, 연구비 : 5,000천원)하여 연구비 3,000천원을 지원받은 다음 위 학술지 논문게재증명서를 첨부하여 2019. 4. 23.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연구비 잔액 2,000천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논문 원서접수('18. 9. 3.) → 수정본 접수('18. 11. 6.) → 게재 확정('18. 11. 6.) → 게재('19. 4. 30.)	<①번 관련> **○ 경징계(1명)** **○ 시정(회수)** -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한 H로부터 연구비 합계 5,000,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未제출에 관한 사항】- ② - 또한, 덕성여자대학교는 2016학년도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대상자인 I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2018. 3. 1.자 퇴직했음에도 위 학년도에 지원한 교내연구비 1,847,200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붙임】 "교내연구비 회수대상자 연구비 未회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에 위 I 등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3명이 제출기한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들로부터 교내연구비 합계 11,840,64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번 관련> **○ 경고(9명)** **○ 시정(회수)**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교내연구비 회수 대상인 I 등 3명으로부터 기 지원한 연구비 합계 11,840,64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별지】

②관련 “경고” 처분 대상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
6	-	-	-	
7	-	-	-	퇴직으로 불문
8	-	-	-	퇴직으로 불문
9	-	-	-	

【붙임】

교내연구비 회수대상자 연구비 未회수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과제연도 (연구기간)	과제명	연구비			연구비 회수 사유
						신청액	지원액	未회수액	
1	-	교수	-	2016 (2016.3.1.~ 2017.2.28.)	-	6,000,000	1,847,200	1,847,200	· 결과물 未제출
2	-	부교수	-	2017 (2017.3.1.~ 2018.2.28.)	-	5,000,000	4,993,440	4,993,440	· 결과물 未제출
3	-	교수	-	2017 (2017.3.1.~ 2018.2.28.)	-	5,000,000	5,000,000	5,000,000	· 결과물 未제출
합 계						16,000,000	11,840,640	11,840,64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덕성여자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망실 연구기자재 변상 등 未조치** ○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33조 및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르면 정관 등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하고, 「덕성여자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1994. 9. 1 제정, 2017. 6. 14. 개정)」 제11조에 따르면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는 연구 종료 후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며, 「덕성여자대학교 비품관리규정(1978. 3. 1 제정, 2009. 7. 28. 개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비품사용부서는 비품대장 부본을 정비하고 2년에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비품의 훼손이나 망실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년도 재물조사('17. 12. 4. ~ '18. 1. 31.)결과, 2012. 7. 24. J가 교외연구과제(" ㄷ 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56,100천원, 연구기간 : 2012. 5.1.~2013. 4. 30.) 연구비로 구입한 노트북(장부가액 1,767,700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 "망실 연구기자재 변상 등 未조치 현황"과 같이 2017년도 재물조사 결과 위 J 등 3명이 연구비로 구입한 노트북 등 연구기자재 5점(장부금액 4,286,700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9.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에 대해 변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주의(5명)** ○ **통보** - 재물조사 결과 분실된 노트북 등 5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붙임】

망실 연구기자재 변상 등 未조치 현황

(단위 : 원)

연번	기자재명	품명	구입일	구매처	장부가액	연구책임자	교외연구 지원기관	망실 확인일
1	노트북	도시바 Z830 PT224K-02800G	2012.7.24.	-	1,767,700	-	한국연구재단	'18.1.31.
2	외장하드	-	2016.11.14.	-	143,000	-	한국연구재단	'18.1.31.
3	외장하드	-	2016.11.29.	-	198,000	-	한국연구재단	'18.1.31.
4	Diapharm Vacuum Pump	N820	2014.10.07.	-	1,980,000	-	한국연구재단	'18.1.31.
5	아이패드 Protection Plan3	ME279KH/A	2014.12.11.	-	198,000	-	창업진흥원	'18.1.31.
합 계					**4,286,7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덕성여자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시설공사 환경관리비 未정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덕성여자대학교는 2016. 5. 16. ▽▽ ㈜(대표 K)와 계약 체결한 '◁ ◁ 환경개선공사(계약일 2015. 12. 17. 계약금액 4,720,000천원)'의 준공대금을 지급하면서 직접공사비에 계상되었음에도 업체가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환경관리비의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19,475,991원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 "시설공사 환경관리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5. 12.부터 2017. 6.까지 계약 체결한 위 '◁ ◁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공사 2건의 준공대금을 지급하면서 직접공사비에 계상되었음에도 업체가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환경관리비의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합계 19,968,200원을 정산(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 **시정(회수)** -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환경관리비 합계 19,968,200원을 ▽▽ 등 2개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붙임】

시설공사 환경관리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대표자)	계약일 (정산일)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未정산 내역	
				계상액	未정산액
◁ ◁ 환경개선공사	-	2015.12.17. (2016.5.16.)	4,781,000,000	19,475,991	19,475,991
◇◇ EHP 시스템에어컨 전기공사	-	2017.06.09. (2017.9.18.)	159,513,012	492,209	492,209
합 계			**4,940,513,012**	**19,968,200**	**19,968,200**